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이홍민 의원)

의안 번호	19-31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3. .

발의자 : 이홍민, 강명숙, 권영숙, 김기석,
김성희, 김영미, 김종선, 신종갑, 이민석,
장덕준, 조영덕

1. 제안이유

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서점 정의(안 제2조)
- 나.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다.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(안 제5조)
- 라.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(안 제6조)
- 마. 지역서점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(안 제7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

- 나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
- 다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19. 3. 28. ~ 4. 1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역서점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서점업으로 등록한 업체
2.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
3.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(학원, 납품위주 업체, 유통사, 도매업, 도서할인 매장 제외)
4. 일반도서의 전시·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% 이상인 서점
5. 구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, 저자초청 특강,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

제3조(적용범위)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

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)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
2. 작가와의 만남, 독서동아리 운영,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
3.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
4.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 구청장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)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, 전시, 토론회,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포상)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